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18. 9. 28.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(www.emsip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무선국 개설신고서

(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(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)

신고인	법인명 (성명)		법인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
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–) 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		

개설 목적		무선국 종별		무선국수	
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	※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/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				
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					
주파수		전파형식		안테나공급전력 (W, kW)	

무선기기 명세	기기의 명칭 (모델명)	적합성평가번호	기기일련번호
그 밖에 필요한 사항			

「전파법」 제1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, 제22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